pISSN 1226-8593 eISSN 2383-613X Sci. Emot. Sensib., Vol.22, No.2, pp.3-16, 2019 https://doi.org/10.14695/KJSOS.2018.22.2.3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학대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

Factors Affecting Intentions of Reporting Child Abuse: The Interaction between Type of Abuse, Sex, and Construal-level

고혜인1. 김성봉27

Hye-In Ko¹, Sung-Bong Kim^{2†}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measures to promote the reporting of child abuse, instances of which are increasing year after year. To this end, 16 cases of child abuse, encompassing four instances of each of the four types of child abuse (physical, neglect, sexual, and emotional), were presented to participants to examine whether the perception of each type of abuse affected the degree of its perception as a case of child abuse. Next, the effects of the four types of child abuse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low vs. high)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gender (male vs. female) and the construal level.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differed in the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depending on varied factors despite the fact that they perceived all cases as child abuse. In particular,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for cases of physical abuse and neglect. However, women exhibited a stronger intent than men to report sexual and emotional abuse. Further, the intention of reporting child abuse was stronger at the high construal level (related to why child abuse must be reported) than it was at the low construal level (concerned with what to do about child abus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provision of educational content, the creation of publicity materials that place differing emphases on sex, and the application of low construal level education for reporting child abuse.

Key words: Child Abuse, Types of Child Abuse, Construal-level, Sex, Intention to Report a Child Abuse

요 약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 가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아동학대, 아동학대 유형, 해석수준, 성별, 아동학대 신고의도

¹ 고혜인: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²†(교신저자)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E-mail : edutopia@jejunu.ac.kr / TEL : 064-754-2166

1. 서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행위 이다(Lee & Kim, 2014).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Child abuse)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Physical), 정신적(Emotional), 성적(Sexual)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Abandoment)하거나 방임(Neglect)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 Son, 2018; Park & Kim, 2018; Park & Moon, 2018; Lee, 2018). 아동기 피학대 경험은 성인기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에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알려져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이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동학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Kim & Kim, 2008; Hwang, 2004).

경제 불황이 아동학대와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은 통계적인 수치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Park & Park, 1999; Lee & Park, 2000).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과 이로 인한 가정 해체가 전 사회적 문제로확산된 2001년 2,105건으로 집계되었던 아동학대는 5년 후인 2006년에는 5,202건, 다시 5년 후인 2011년에는 6,058건, 또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18,700건으로집계되었고(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2017년에는 22,157건이 되면서 연간 2만 건을 넘어섰다((Department of the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 2018). 이처럼 아동학대는 약 2천여 건에서약 2만여 건으로약 16년 사이 10배 정도증가하였다.

아동학대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Kim & Yang. 2007). 아동학대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Kim & Lee, 2011; Hong & Kim, 2007). 그리고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아

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Choi & Im, 2010).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아동학대는 여전히 존 재하고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들의 아동 학대 신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ee, 2006; Ha & Sim. 2019). 2017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 건 가해자의 76.8%가 친부모이고, 학대장소의 80.4% 가 가정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아동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 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행동이 매우 중 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 신 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 련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 논문은 2000년부터 현재 까지 50여 편 밖에 없으며, 신고의도 및 신고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 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혹은 아동학대 신고의 효용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도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 마련과 교육을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 유형은 구분하였으나,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를 촉진하는 정책과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아동학대 사례를 사람들이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며, 어떤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며, 어떤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강하게 지각되는 사례에서는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증가하는지, 아동학대가약하게 지각되는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도가 약화되는지,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과 아동학대 유형의 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지에대해서도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이 교사와 같은 신고

의무자에 한정되어 있고,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Kim & Lee, 2011; Yoo et al., 2013; Won, 2009; Choi, 2011; Choi & Im, 2010).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반화 가 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신고의무자를 표본으 로 수집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 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색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Construal level)이 아동학대 신고 의도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집단뿐만 아니라 비신고의무자 집 단(일반인)에게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 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 요인의 일반화 가능성도 증대시킬 것이다.

다음의 연구문제는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연구문제1-1, 1-2, 2-1, 2-2, 3은 탐색적 연구 주제이고, 연구문제4는 이론적 배경과 가설이 있는 연 구주제이다.

연구문제1-1: 아동학대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 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1-2: 아동학대 유형별로 아동학대 신고의 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1: 성별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2: 성별과 아동학대 유형의 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 가 강할 것인가?

이러한 여섯 가지 연구문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 에서 잠재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아동학대 유형별로 아동학대 지각과 신고의도가 다른 지 확인하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 교육에서 어떤 학대 유형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성 별에 따라 아동학대 지각과 신고의도가 달라짐을 확 인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교육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신고의무자와 비의무자의 아동학대 지각과 신 고의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교육에 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해석수준과 심리적 거리감

사람들은 어떤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Concrete construal)할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해석(Abstract construal)할 수도 있다(Liberman, Sagristano, & Trope, 2002).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해당 목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할 것과 관련하여 사 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를 추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해당 목표를 왜, 무엇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Liberman & Trope, 2008). 해석수준 이론(Construal-level theory)은 전자를 저수준 해석(Low-level construal)으로, 후자를 고수준 해석(High-level construal)이라고 이름 붙였다(Trope & Liberman, 2010). 예를 들어, 운동을 하려는 목표에 대 해 사람들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이는 저수준 해석이다 (Hansen & Trope, 2013). 반면 운동을 왜 할 것인지 혹 은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운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는 고수준 해석에 해당한다(Liberman, Trope, McCrea, & Sherman, 2007).

해석수준은 심리적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 에 영향을 미친다(Trope & Liberman, 2010).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어떻게(how)'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하게 되면(저수준 해석), 해당 목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 가까워져서 지금 당장 수행할 일로 지각하게 되지만, 어떤 목표를 '왜(why)'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하게 되면(고수준 해석), 해당 목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져서 해당 목표를 지금 당장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 혹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각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Trope & Liberman, 2003).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해석수준과 심 리적 거리감의 상호작용은 목표행동 실행의도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떤 목표에 대한 고수준 해석(왜 해야 하는지)을 할수록 해당 목표의 실행의도 가 낮아지고, 저수준 해석(어떻게 할 것인지)을 할수 록 해당 목표 실행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Liberman, Trope, & Wakslak, 2007).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기대가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부적으로 목표에 대한 고수준 해석을 할수록 목표행 동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을 미루고, 저수준 해석을 할 수록 목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의도가 증가한다 는 연구가 있고(McCrea, Liberman, Trope, & Sherman, 2008), 어떤 목표에 대한 고수준 해석은 어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게 보게 만들지만, 저수준 해석은 어 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게 보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다(Wakslak & Trope, 2009).

2.2.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일종의 목표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 해석수준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Eyal, Sagristano, Trope, Liberman, & Chaiken, 2009). 몇몇 연구는 본 연구의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일하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시나리오를 읽더라도,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는 추상적 해석을 하게 하면, 이에 대한 책임감을 낮게 지각하지만, '밧줄을 던져 준다'라는 구체적 해석을 하게 하면,

이에 대한 책임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Plaks & Robinson, 2015). 이러한 선행연구는 '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추상적으로 해석할 때보다 '어떻게 아동학대 신고를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때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제공할 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Baskin, Wakslak, Trope, & Novemsky, 2014). 그런데, 추상적인 해석은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공할 도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이 제공할 도움의 결과보다는 자신이 제공할 도움의 과정과 방법 자체에 주목하게 만들수 있다면, 이타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Fujita, Eyal, Chaiken, Trope, & Liberman, 2008).

아동학대 신고의도도 이타적 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에 따라 신고의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 결과 혹은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주목하게 하면서 아동학대를 추상적으로 해석하게 하면 신고의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 과정 혹은 아동학대 신고라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게 하면서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게 하면 신고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사전조사와 본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사전조사는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들이 실제로 아동학대라고 지각되는지와 사례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되는 정도가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조사는 이러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고수준으로 해석한 참가자와 아동학대를 저수준으로 해석한 참가자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의무자 사이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볼 것이다.

3.1. 사전조사 : 사례별 아동학대 지각

사전조사를 위해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201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된 아동학대 판례 100선의 판례들과 가상의 의심상황에 대한이야기로 구성하였다(부록참고).

아동학대 유형별 이야기 구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PA)1은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1429 판결(2016.6.9.), 신체적 학대(PA)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3277 판결(2015.9.18.), 신체적 학대(PA)3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6고단242 판결(2016.6.2.), 신체적 학대(PA)4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선고 2016고단552 판결(2016.6.22.)로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사례를 근거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방임((NG)1은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1945 판결(2016.8.4), 방임(NG)2와 방임(NG)3은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노1139 판결(2015.6.1)을 참조하여 가상의 스토리로 구성하였으며, 방임(NG)4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15고단3737 판결(2016.5.4)된 사례이다.

성적 학대(SA)1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단 193 판결(2016.6.10)된 아동복지법위반 사례, 성적 학대(SA)2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선고 2016고합36 판결(2016.7.1)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사례, 성적 학대(SA)3은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6고합 162, 2016초기559(병합), 2016전고15(병합)판결(2016.7.15)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보호관찰, 부착명령으로 선고된 사례이다. 성적 학대(SA)4는 성학대의심되는 아동의 행동적 징후(www.korea1391.org)에근거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정서적 학대(EA)1은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 651 판결(2016.1.22), 정서적 학대(EA)2는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421 판결(2016.7.6), 정서적 학대(EA)3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노2970판결(2015.10.16), 정서적 학대(EA)4는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 2731판결(2016.6.23)로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사전조사를 위해 22세~57세(Mean Age = 36.72, SD = 7.96)의 한국 성인 50명(남: 15, 여: 35)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16개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읽고 '이 사례가 얼마나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지'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사례가 등장하는 순서에는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신체적 학대 → 방임 → 성적 학대 → 정서 적 학대'의 순으로 4회기에 걸쳐 제시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이와 반대의 순서로 4회기에 걸쳐 제시되 는 것이다. 사전조사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참가자가 16가지 사례에 대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 분석을 수행하였다. Cronbach's a 분석결과, 응답에대한 내적일관성은 .798로 충분히 높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또한 16가지 사례에서 지각된 아동학대 점수평균은 6.11(SD = .59)로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에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7점 척도로 측정한 아동학대 지각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정값을 7점 척도 중 '5점'으로 설정한 단일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정값을 5점을 설정한 이유는 7점 척도에서 4점은 '보통이다'라고 표현되었고, 5점은 '조금 그렇다'로 표현되었는데, 전체적으로 5점인 조금 그렇다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점수 평균과 검정값 5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검정값 = 5, t(49) = 13.083, p < .001). 이는 참가자들이 모든 사례를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아동학대 유형별로 아동학대 지각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아동학대 유형(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유형이 아동학대 지각에 미치는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F(3, 147) = 1.073, p = .363). Table 1은 사례별 아동학대 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3.2. 설계 및 참가자

본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 유형 4 (참가자내: 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 아동학대신고 해석수준 2

Physical abuse(PA) $\alpha = .712$			Negligence(NG) $\alpha = .513$			Sexual abuse(SA) $\alpha = .667$			Emotional abuse(EA) $\alpha = .533$		
Case No.	Mean	SD	Case No.	Mean	SD	Case No.	Mean	SD	Case No.	Mean	SD
PA1	5.80	1.41	NG1	5.32	1.92	SA1	6.28	0.99	EA1	6.44	1.01
PA2	5.44	1.62	NG2	6.32	1.08	SA2	6.44	0.81	EA2	6.56	0.73
PA3	6.38	1.09	NG3	6.40	0.93	SA3	6.14	1.11	EA3	5.76	1.57
PA4	6.34	0.87	NG4	6.26	0.85	SA4	5.98	1.38	EA4	5.82	1.10
PA	5.99	1.25	NG	6.08	1.19	SA	6.21	1.07	EA	6.15	1.10

Table 1. Perceived child abuse($\alpha = .798$) in 16 cases (M = 6.11, SD = .59)

(참가자간: 저수준 vs. 고수준) × 성별 2 (참가자간: 남 vs. 여)의 혼합요인설계(mixed factors design)를 채택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본 조사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설문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일 시적인 부정정서의 위험, 부정적인 정서가 지속될 시심리 상담이 가능한 센터 연락처, 설문 진행 중 언제든지 중단 가능하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을 시에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설문 참여 및 개인 정보 사용에 동의한 참가자에 한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는 20세 ~ 61세(Mean Age = 38.15, SD = 7.32)의 한국 성인 300명(남: 105, 여: 195)이 참여하였고, 150명은 참가자간 조건인 저수준 해석 조건 (Low-level construal)에 남은 150명은 고수준 해석 조건(High-level construal)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참가자의 연령대는 20대 41명, 30대 137명, 40대 101명, 50대 이상은 21명이었다.

3.3. 재료 및 절차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해석수준 점화 과제를 수행한 후, 아동학대 사례별 신고의도 측정설문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수준 해석 점화 과제 조건 참가자들은 1) 아동학대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2) 아동학대신고를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3) 아동학대신고가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80자 이내로 약술하였다. 반면 저수준 해석 과제 조건 참가자들은 1) 아동학대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2) 아동학대신고를 언제 할 것인지, 3) 아동학대신고를 어디서 할 것인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80자 건인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80자

이내로 약술하였다.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이 점화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16가지 사례를 하나씩 읽고, '이사례를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사례를 제시하는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였다. 즉 참가자의 절반은 사례유형이 '신체적 학대 → 방임 → 성적 학대 → 정서적 학대'의 순으로 제시되는 조건에, 다른 절반은 이 반대의 순으로 제시되는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신고의도에 응답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 아닌지, 성별은 무엇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조사 진행에는 30분이 소요되었다.

4. 연구 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참가자가 16가지 사례에 대해 응답한 신고의도 점수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내적일관성은 .920으로 충분히 높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적일관성은 .780, 방임에 대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적일관성은 .788, 성적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적일관성은 .809, 정서적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적일관성은 .809, 정서적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적일관성은 .809, 정서적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적일관성은 .781이었다.

이어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 대신고 해석수준, 성별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와 관련 없는 변인들이 적절하게 통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령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아동학대 사 례 제시순서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즉 아동학대 유형 4 (신체 vs. 방 임 vs. 성 vs. 정서) × 아동학대신고 해석수준 2 (저수 준 vs. 고수준) × 아동학대 사례 제시순서 2 (A vs. B) × 아동학대 신고의무 유무 2 (없음 vs. 있음) × 성별 2 (남 vs. 여) × 연령대 4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이상)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혼합변 량분석(mixed ANOVA)을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사례제시 순서(F = .202, p =.653), 연령(F = 1.323, p = .267), 신고의무 유무(F = 3.535, p = .061)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확인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유형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는 확인할 수 있었다($F(3, 1196) = 6.772, p < .001, \eta_p^2$ = .03). 즉 신체적 학대(M = 5.43, SD = 1.01)와 방임 (M = 5.46, SD = 1.10)에 대한 신고의도가 가장 낮았 $\overline{\mathcal{L}}(t(299) = .504, p = .615), 정서적 학대(M = 5.61, SD)$ = .94)에 대한 신고의도가 신체적 학대(t(299) = 4.577, p < .001)와 방임(t(299) = 2.939, p = .004)보다 높았으 며, 성적 학대(M = 5.72, SD = .93)에 대한 신고의도는 신체적 학대(t(299) = 6.622, p < .001), 방임(t(299) =4.567, p < .001)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보다도 높았다 (t(299) = 3.364, p = .001).

아울러 성별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F(1, 298) = 10.021, p = .002, \eta_p^2 = .04)$ 및 성별과 아 동학대 유형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났다(F(1, 296) = 6.423, p < .001, $\eta_n^2 = .03$). 즉 전반적으로 남성의 아동학대 신고의도(M = 5.40, SD= 1.00)보다 여성의 아동학대 신고의도(M = 5.64, SD = .76)가 더 강했고(t(298) = 2.249, p = .025), 유형별 로는 신체적 학대 유형에 대한 남성(M = 5.35, SD = 1.58)과 여성(M = 5.47, SD = .92)의 신고의도(t(298)= 1.058, p = .291) 및 방임 유형에 대한 남성(M = 5.40, SD = 1.22)과 여성(M = 5.48, SD = 1.03)이 신고 의도(t(298) = .635, p = .526)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성적 학대 유형에서는 남성(M = 5.49, SD = 1.03)보다 여성(M = 5.84, SD = .85)의 신고의도가 높았고(t(298)= 3.196, p = .002), 정서적 학대 유형에서도 남성(M = 5.37, SD = 1.07)보다 여성(M = 5.74, SD = .84)의

신고의도가 높았다(t(298) = 3.211, p = .001). Fig. 1은 성별과 아동학대 유형의 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 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F(1, 298) = 97.841, $p < .001, \eta_p^2 = .29$). 즉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저수준 해석을 할 때(M = 6.14, SD = .55)가 고수 준 해석을 할 때(M = 4.97, SD = .70)보다 신고의도가 강했다(t(298) = 16.028, p < .001).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 조건(M = 6.05, SD = .73)이 고수준 해석 조건(M = 4.81, SD = .86)보 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가 강했고(t(298) = 13.353, p < .001), 저수준 해석을 할 때(M = 6.03, SD= .92)가 고수준 해석을 할 때(M = 4.88, SD = .95)보 다 방임에 대한 신고의도가 강했으며(t(298) = 10.733)p < .001), 저수준 해석일 때(M = 6.28, SD = .65)가 고수준 해석일 때(M = 5.16, SD = .83)보다 성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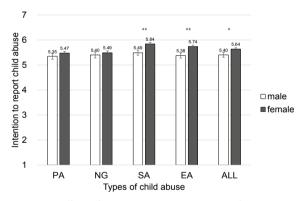


Fig. 1.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types of child abuse and sex on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Error bars mean standard error of the means. *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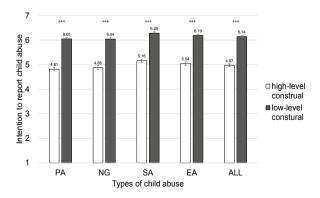


Fig. 2.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reporting child abuse on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Error bars mean standard error of the means. *** : p < .001.

Control factors	N	1- G4	PA		NG		SA		EA		CA(ALL)	
		sub-factors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ge	41	20~29	5.96	0.78	5.66	1.12	6.01	0.80	5.89	0.92	5.88	0.75
	137	30~39	5.33	0.96	5.40	1.03	5.59	0.90	5.56	0.89	5.47	0.81
	101	40~49	5.36	1.10	5.43	1.25	5.74	1.03	5.57	1.01	5.53	0.97
	21	50~	5.33	1.01	5.54	0.76	5.88	0.75	5.60	0.92	5.59	0.72
Report obligation	160	obligator	5.54	1.06	5.47	1.09	5.78	1.00	5.70	1.00	5.62	0.91
	140	non-obligator	5.31	0.93	5.45	1.12	5.65	0.85	5.51	0.85	5.48	0.79
Case order	150	A	5.49	1.03	5.39	1.12	5.79	0.97	5.67	0.97	5.58	0.90
	150	В	5.37	0.99	5.53	1.08	5.65	0.89	5.56	0.90	5.53	0.8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ccording to age range, report obligation, case order

에 대한 신고의도가 강했고(t(298) = 13.079, p < .001), 저수준 해석일 때(M = 6.19, SD = .67)가 고수준 해석일 때(M = 5.04, SD = .81)보다 정서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도 강했다(t(298) = 13.407, p < .001). Fig. 2는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외의 다른 요인들(연령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아동학대 사례제시 순서)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ps > .05)(Table 2).

5.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정도(연구문제 1-1)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다를지(연구문제 1-2), 성별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다를지(연구문제 2-1), 성별과 아동학대 유형의 상호 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지(연구문제 2-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다를지(연구문제-3)이라는 탐색적차원의 연구주제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할 수 있다(연구문제-4)는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의 네 가지 유형(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이 아동학대 지각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으나(연구문제 1-1), 아동학대의 유형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나타났다(연구문제 1-2). 즉참가자들은 성적 학대 > 정서 학대 > 방임 = 신체적학대 순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강하게 응답했다.

또한 성별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고(연구문제 2-1), 성별과 아동학대 유형의 상호 작용 효과도 관찰되었다(연구문제 2-2). 전반적으로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서는 남녀의 신고의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성적 학대와 정서학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신고의도를 나타냈다(Fig. 1). 신고의무자와비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는나타나지 않았다(연구문제 3).

더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연구문 제 4).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저수준으로 해석 (어떻게 아동학대 신고를 할 것인지)할 때가 고수준으 로 해석(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하는지)할 때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Fig. 2).

5.1. 선행연구와의 연관성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신고의도가 달라진다는 것과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성별이라는 것이다. 즉성적 학대와 정서 학대에 대한 신고의도가 방임과 신체적 학대보다 강했는데, 이는 성적 학대와 정서 학대에 대한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하다는 것에 기인한다(Fig. 1).

성적 학대에 대한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 의도보다 강한 현상은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 의 성인지 감수성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 이 있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한 개 인이 양성 평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 한 개념으로 보통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보다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다(Ahn, Kim, & Ahn, 2005). 즉, 남성은 여성보다 성 차별적 성향이 강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양성 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다(Glick, P., & Fiske, 1996; 2001).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적 학대 사례들은 모두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였는데, 이는 양성 평등과 관련된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자극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극된 여성의 성인지 감 수성은 성적 학대 사례를 신체적 학대나 방임보다 더 심각한 학대로 지각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유형들보다 신고의도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남성들에게는 성적 학대 사례 들이 신체적 학대나 방임과 같은 사례들과 차이가 지 각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신고의도에서도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 학대에 대한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한 현상은 여성의 공감 능력이 남성의 공감능력보다 높은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Christov-Moore et al., 2014; Eisenberg & Lennon, 1983). 구체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타인의 표정의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는 능력이 낮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낮다(Eisenberg, Fabes, & Shea, 1989). 이러한 남녀 차이는 정서 학대와 관련된사례에 대한 남성의 공감수준을 여성의 공감수준보다낮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석 학대에 대한 남성의 신고의도가 여성의 신고의도보다 약해졌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 도에 미치는 효과도 본 연구가 새롭게 관찰한 현상 중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Liberman & Trope, 2008; Trope & Liberman, 2003; 2010).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고하게 되면 아동학대 신고와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져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장 해야 할 일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와 심리적 거리감이 대해 사고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고하게 되면 아동학대 신고와 심리적 거리감이 가

까워져서, 아동학대 신고를 즉시 해야 할 일로 인식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5.2. 시사점

본 연구가 관찰한 현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관찰한 성별과 아동학대 유형의 상호작용은 아동학대 신고 홍보물 제작 및 아동학대 신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남녀에게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 제공하는 홍보물이나 남성 대상 오프라인 교육에 성 학대와 정서 학대를 강조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전반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혹은 홍보자료보다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혹은 홍보자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학대 신고를 '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교육이나 홍보자료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멀어지게 만들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교육이나 홍보자료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업명하는 교육이나 홍보자료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동학대신고을 증진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3. 한계와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 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되는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유형별로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 및 지각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 참여인원이 50명으로 비교적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지각된 아동학대 수준에 대해서도 더 많은 표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서 관찰한 것과 같은 아동학대 유형별 차이 혹은 성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해석수준을 점화한 후, 아동학대 신 고의도를 측정하였으며, 한 개인이 평상시에 어떤 해 석 방식을 우세하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도가 달라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평상시에 다양한 행동에 대해 저수준 해석 빈도가 높 은지, 아니면 고수준 해석 빈도가 높은지를 측정한 후, 이러한 개인차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면서 아 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을 하였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행동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즉, 신고의도(112에 전화를 하려고 싶은 정도)와 신고행동(실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저수준으로 해석할 때가 고수준으로 해석할 때보다 신고행동이 증가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관찰한 성별의 효과를 해석하면서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 수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기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 유형별로 아동학대 신고의도가다른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hn, S., Kim, H., & Ahn, M.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mbivalent sexism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2), 39-66.
- Baskin, E., Wakslak, C. J., Trope, Y., & Novemsky, N. (2014). Why feasibility matters more to gift receivers than to givers: A construal-level approach to gift giv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1), 169-182. DOI: 10.1086/675737
- Christov-Moore, L., Simpson, E. A., Coudé, G., Grigaityte, K., Iacoboni, M., & Ferrari, P. F. (2014). Empathy: gender effects in brain and behavior. *Neuroscience*

- & *Biobehavioral Reviews*, 46, 604-627. DOI: 10.1016/j.neubiorev.2014.09.001
- Department of the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 (2016). 아동학대관례 100선[100 case of judicial precedent about child abuse]. Department of the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
- Department of the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2018). 2017 National Child Abuse Status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 Seoul, Korea: Department of the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
- Department of the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 homepage: www.korea1391.org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1), 100-131.

DOI: 10.1037/0033-2909.94.1.100

- Eisenberg, N., Fabes, R., & Shea, C. (1989).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and prosocial moral reasoning: Empirical investigations. In M. M. Brabeck (Ed.), Who cares?: Theory, research,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ethic of care (pp. 127-143). New York, NY, England: Praeger Publishers.
- Eyal, T., Sagristano, M. D., Trope, Y., Liberman, N., & Chaiken, S. (2009). When values matter: Expressing values in behavioral intentions for the near vs. distant fu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1), 35-43.

DOI: 10.1016/j.jesp.2008.07.023

Fujita, K., Eyal, T., Chaiken, S., Trope, Y., & Liberman, N. (2008).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near and distant obj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562-572.

DOI: 10.1016/j.jesp.2007.10.005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o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Hansen, J., & Trope, Y. (2013). When time flies: How abstract and concrete mental construal affect the

- perception of tim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2(2), 336-347.
- DOI: 10.1037/a0029283
- Ho-kyoon Lee(2006), The Status of Child Maltreatment & Legal Limitations with Ways of Reform,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 20(1), 163-192.
- Hyeju ha, Eun-jung Shim(2019). Types of child maltreatment and patterns of depression symptoms: A network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30(1), 251-277. DOI: 10.14816/sky.2019.30.1.251
- Hyeok-Don Kim, Ji-a Son(2018). The Concept of Child Abuse in Consideration of Child Welfare. Kyunpook Natl. Univ. Law Journal, 63, 347-372.
- Hyonjoo Lee& Soyoung Park(2000).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Crisis on the Child Abuse in Low Income Famil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 64-85.
- Kyung il Choi, Jong ho Im(2010). Teach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toward Child Abuse Report: A Comparison Teacher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nd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 26(1), 55-74.
- Kyung Il Choi(2011). Factors Influencing Teachers' Intentions to Report a Child Abuse. Journal of Youth Welfare, 13(1), 27-46.
- Kwang-Hyuk Kim& Ye-Sung Kim(2008). Process analysis of poverty influencing on child abuse and neglect - Analyzing mediating effect of parent's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5), 847-859.
- Lee, Bong-Joo, & Kim, Se-Won, (201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 18(2), 163-195.
- Liberman, N., Sagristano, M. D., & Trope, Y. (2002). The effect of temporal distance on level of mental construa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6), 523-534.
 - DOI: 10.1016/S0022-1031(02)00535-8
- Liberman, N., Trope, Y., McCrea, S. M., & Sherman, S. J. (2007). The effect of level of construal on the temporal distance of activity enact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143-149.

- DOI:10.1016/j.jesp.2005.12.009
- Liberman, N., Trope, Y.,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 theory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113-117. DOI: 10.1016/S1057-7408(07) 70017-7
- Liberman, N., & Trope, Y. (2008). The psychology of transcending the here and now. Science, 322(5905), 1201-1205. DOI: 10.1126/science.1161958
- McCrea, S. M., Liberman, N., Trope, Y., & Sherman, S. J. (2008). Construal level and procrastination. Psychological Science, 19(12), 1308-1314. DOI: 10.1111/j.1467-9280.2008.02240.x
- Mee Hong, Hyo-Jin Kim. (2007). Child Abuse and Neglect: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Measur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6), 47-59.
- Mee Sook Kim, Sim Young Yang(2007). Korean Children in Crisis and Policy Measur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6), 5-20.
- Min Sun Park, Seong Yeon Park(1999). Economic Hardship, Child Rearing Attitudes and Adjustment Behavior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2), 57-74
- Ministy of Health and Welfare. (2018). 2017 National Report on Child Abuse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 고서] http://www.mohw.go.kr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Child protection status of victims of abuse. Daeje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Ock Kyeung Hwang. (2004). The Promoting the Fostering Care for Children's Rights,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2(1), 131-147.
- Plaks, J. E., & Robinson, J. S. (2015). Construal level and free will beliefs shape perceptions of actors' proximal and distal intent. Frontiers in Psychology, 6, 777-777. DOI: 10.3389/fpsyg.2015.00777
- Sewon, Lee(2018).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of Child Abuse Crime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3), 217-246. DOI: 10.15709/hswr.2018.38.3.217
- Soo Jung Kim, Jea Yeon Lee(2011). Mandatory Reporti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 Children & Rights, 15, 21-43.
- Soo-Hee Park, Jun-seob, Moon(2018), Review and Impronement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4(4), 73-90.
- Sung-Ae, Lee&Hyun-Bin, Jo. (2018).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4, 121-136.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DOI: 10.1037/0033-295X.110.3.403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Wakslak, C., & Trope, Y. (2009).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subjective probability estimates. *Psychological Science*, 20(1), 52-58.

DOI: 10.1111/j.1467-9280.2008.02250.x

- Won Joo Chong (2009). Influencing Factors on the exclusion of intention in reporting of child abuse -focus on day-care center teac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7, 133-152.
- Yeon-Ju Park, & Bong-Sun Kim (2018). Comparing pre and post judgment of [Law on special cases of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sentencing of child abuse death cas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0(3), 139-157.
- Yung-Eui Yoo, Jin-Hee Lee, Jin-Hyoung Lim(2013).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tion about the Seriousness of Child Abouse and the Child Abouse Reporting on Reporting on Reporting Intention. *Soonchunhyang J. Instit Humanit*, 32(3), 123-147.

원고접수: 2019.04.25 수정접수: 2019.05.07 게재확정: 2019.05.12

^{© 2019 (}by) the authors. This open access article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록

신체 학대(Physical Abuse, PA)

PA1. 아동이 친부는 14세 남자 아동에게 동생(7세)의 밥을 챙겨주라고 하였으나, 아동이 방문을 닫고 방 안 으로 들어가자, 발로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이불 안에 숨어있는 아동의 몸을 발로 수회 짓밟음. 또한 아동이 친부와 친모 간 대화 중 끼어든다는 이유 로 훈계를 하였고, 이에 아동이 욕설을 하자, 주먹으 로 왼쪽 턱을 3회 때림.

PA2. 14세 여자 아동은 비행 문제로 친부와 갈등이 심했음. 최근,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후, 친부가 아동에게 훈육을 하자, 이에 아동이 친부에게 짜증내며 말대답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함. 이에 친부는 화가나 주먹과 손바닥 으로 아동의 머리와 뺨을 4-5회 때리고, 아동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듦.

PA3. 만 2세 아동이 울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친모는 베란다에 나 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서 있게 하거나, 손으로 아동 의 등을 자주 때림. 한 번은 신문지를 둘둘 말아 만든 몽둥이로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함. 친모는 출산 후에 양육 스트레스가 심했고,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먹고 있음.

PA4. 만 3세와 만 1세 여자 아동이 방을 어지럽힌다 는 이유로 아동의 조모가 아동들에게 플라스틱 파리 채로 아동의 손등 부위를 각각 2회 때리고, 손바닥으 로 아동의 입 부위를 1회 때림. 그리고 아동들이 움직 이지 못하게 의자에 줄로 묶은 놓은 후, 조모가 신었 다가 벗어놓은 양말을 각각 입에 물게 함.

방임(Negligence, NG)

NG1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동이 3일 동안 무단결석 을 함. 아동이 학교에 오지 않아, 부모와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부모는 연락이 되지 않음. 학교 상담사가

아동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아동의 일상에 대한 이야 기를 하던 중, 아동은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을 하 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며, 잠을 자느라 학 교에 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함.

NG2. 아동(9세, 남)은 추운 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등 교함. 아동을 며칠 동안 관찰해보니,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옷이 바뀌지 않음이 관찰됨. 아동에게 "아 침 밥은 먹었니?" 물어보자, 아동은 집에서는 밥을 먹 지 않고, 거의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이나 라면을 사 먹는다고 함. 아동의 몸에서 오랫동안 씻지 않음으로 인한 냄새가 심하게 남.

NG3. 15개월 영아가 계속 울고 보채는 데, 부모는 아 기를 달랠 생각을 하기는커녕 그냥 방치함. 영아는 열 이 39도가 넘어가고 있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 태가 이틀이 지나고 있었지만, 부모는 아기에게 어떠 한 처치를 하지 않았음. 돌봄 선생님이 이런 상태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영아는 심한 탈수 증세를 보임.

NG4. 아동A(12세, 여), 아동B(10세, 여)의 친모는 생 활고로 인한 스트레스과 우울증이 심함. 남편과 이혼 으로 혼자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무기력 한 심리상태 등의 이유로 쓰레기들을 집안 여기저기 에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쌓아두어 온 집안을 쓰레기 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방치하고 그곳에 서 어린 자녀들을 계속 생활하게 함.

성학대(Sexual abuse: SA)

SA1. 남자 성인은 E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원을 가 고 있던 여자 아동(만 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 위행위를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추 신기하지? 만져볼래? 너 이런 거 처음 보지?"라 고 말하며 계속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함.

SA2. 계부는 아동 A(여, 10세), 아동의 친모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있던 아동 A의 옆으로 다가와 아동의 팔을 주무르다가, 반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올린 후 아동의 가슴을 주무르고, 아동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함. 또한 아동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음.

SA3. 친부는 방으로 들어가 자려는 아동(여, 12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아동을 친부의 몸 안쪽으로 눕게 하고 아동의 다리를 친부의 허벅지를 위해 걸쳐놓은 후 갑자기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아동의 배부위를 주무르다가 아동의 왼쪽 가슴을 주무름. 또한 아동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면서 "살 많이 쪘네!"라고 말함.

SA4. 아동(9세, 남자) 중 한 명이 교사에게 성적인 행동을 자주 보임. 아동은 많은 성적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또래 아이들이 알고 있기에는 도가 넘는 것들임. 또한 자유롭게 성에 관한 어휘를 사용함. 언젠가는 아동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다른 아동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발각된 적도 있음.

정서학대(Emotional abuse: EA)

EA1. 아동(5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자, 아동의 친모는 아동에게 신경질을 내며, 무서운 영상을 틀어주어 이를 시청한 아동으로 하여금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음을 터뜨리게함.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친모는 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아동을 화장실에 남겨 둔 채 나와약 10분간 감금함.

EA2. 이혼 가정이며, 한 부모 가정임. 친부는 아동(11세,여)의 식사나 위생관리 등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혼자 집에 지내도록 하거나,밖에서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음. 또한 아동에게 "집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아동이 극심한 두려움을느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EA3. 친부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만 12세 여자 아동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걷어차고 과도를 바닥에 던지고, 과도로 빈 막걸리 병을 찌름. 그리고 "내가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며, 아동이 보는 앞에서 가위로 자신의 손을 찌름. 친부는 평소에 아동에게 잘해 주며, 술만 마시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함.

EA4. 아동(만 10세)의 친모가 가출함. 아동의 조모가 아동에게 "너는 주어온 자식이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고 말함. 또한 수시로 새벽 6시경이 되면 잠을 자는 아동을 깨워 앉게 한 후,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다. 남자친구가 있다. 아기를 10명 낳았다"고 이야기 하는 등의 친모에 대한 험담을 함.